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8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 민홍철·이재정·문대림

복기왕 • 윤종군 • 염태영

이소영 · 양문석 · 김준혁

황운하 • 이건태 • 황 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 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

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 · 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

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4(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5(운임감면 법령의 제정·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임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M2五(78日)
등이의 것은 다음과 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 박) <신 설>	1.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
<u> </u>	
	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
	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
	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u>말한다.</u>
<u><신 설></u>	제31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
	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
	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
	공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
	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
	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
	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
	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 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 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 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 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 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
 -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 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 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 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 한 사항
-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 의하는 사항
-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 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4(공익서비스 비용 산정 ·평가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 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신 설>

<신 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 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 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제31조의5(운임감면 법령의 제정 ·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운임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